

# 정보보안 관리규정

전문제정 2012.07.16. 전문개정 2018.06.28. 개정 2019.04.17. 개정 2020.04.06.  
개정 2025.09.16.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운영과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망”이라 함은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처리 및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 노트북 PC, PDA, 서버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통신에 이용되는 컴퓨터 기능을 보유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3. “정보자산”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캠퍼스통신망, 보안시스템 등을 통칭한다.
4. “정보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 등에 의해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정보의 유출 파괴 또는 정보의 위조 변조 등이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대상 및 의무와 책임)

- ① 이 규정의 적용은 본가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자산을 사용하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본교의 전산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 제 2 장 보안조직

### 제4조 (조직)

- ① 정보보안조직은 정보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자(정보보안 실무 운영자)로 구성한다.
- ② 정보보안 담당관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IT지원팀장이 한다.<개정 2019.04.17., 2020.04.06.>
- ③ 정보보안 업무의 담당부서는 IT지원팀으로 한다.<개정 2019.04.17., 2020.04.06>
- ④ <삭제 2019.04.17.>

⑤ 정보보안 담당자는 정보보안 담당관이 선임한다.<개정 2019.04.17.>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역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안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개정 2019.04.17.>
2.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제·개정
3. 정보보안 업무 지도·감독, 정보보안 감사 및 심사분석
4. 정보보안담당자의 업무 관리 감독
5. 정보보안사고 예방 및 처리
6. 정보보안 교육 및 지도감독
7.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신설 2019.04.17.>
8. 그 밖의 정보보안 관련사항<제7호에서 이동 2019.04.17.>

제6조 <삭제 2019.04.17.>

1. <삭제 2019.04.17.>
2. <삭제 2019.04.17.>
3. <삭제 2019.04.17.>
4. <삭제 2019.04.17.>
5. <삭제 2019.04.17.>
6. <삭제 2019.04.17.>

제7조 (정보보안담당자의 역할)

정보보안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보안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9.04.17.>

1. 정보자산목록의 유지보수
2. 정보자산의 보안성 검토
3. 보안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4. 정보자산 보안 현황 모니터링 및 보안 위배사항에 관한 조치
5. 침해사고 대응 및 행정처리, 정보보안 감사업무 처리
6. 정보보안 홍보 및 구성원 교육훈련, 계약관리 지도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제반 사항

제 3 장 위원회

제8조 (구성)

- ① 본교의 중요한 정보보안 정책 수립, 심의는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19.04.17.>
- ② <삭제 2019.04.17.>

제9조 (기능)

이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보보안 사고처리 책임 규명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제 4 장 보호구역 운영·관리

제10조 (보호구역의 구분)

①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조(정보통신시설 보안)에 의한 보호구역(관리책임자)은 다음같이 지정한다.

1. 제한구역 : 전산개발실 (IT지원팀장)<개정 2019.04.17., 2020.04.06>
2. 통제구역 : 메인서버실 (IT지원팀장)<개정 2019.04.17., 2020.04.06.>  
DR장비실 (IT지원팀장)<개정 2025.09.16.>

②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위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구역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 5 장 기타

제11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에 따른다.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3.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
4.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5. 그 밖의 관계 법규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